

양축농민과 세금(Ⅱ)

〈지난 호 97쪽에 이어〉

제5절 양축농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표1〉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정 명 근 교수

(축협중앙회 축산종합개발원)

과 세 대 상	감면세목 및 감면율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 자경농민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야를 취득하여 2년이내에 농지 를 조성하지 않을 때에는 경감된 세금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벼섯 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농기계보관창고 및 농 산물 선별처리 시설 ○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농업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 취득세 추징

○ 자경농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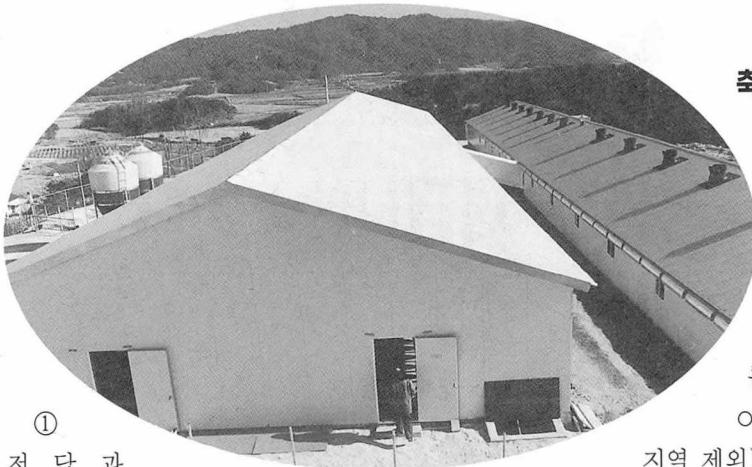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농어민 후계자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이수자 및 재학생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거주지로부터 20km 이내의 농지 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소유자의 둘째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중의 한 사람이 직접 농사에만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의 소재지 : 읍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외의 지역
- 취득자의 소재지 : 농지 및 임야소재지 관할 구·시·읍·면 또는 연접한 지역(20km지역 농지 포함) 내일 것
- 소유농지 및 임야의 규모 :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다음규모 이하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경우에는 그 초과분만을 경감대 상에서 제외한다.



① 전, 담, 과
수원은 3만제곱미터
(농업진흥지역은 20만 제곱미터)

- ②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③ 임야는 30만제곱미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2호 :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
역밖에 소재하는 거주지로부터 20km이내에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

2. 목장용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축산
에 종사한자가 취득하는 목장 용지에 대해 취득
세, 등록세를 50%감면한다.

소유 목장용지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목장
용지를 합하여 25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농기계류등에 대한 감면

주로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
기등 농기계류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4. 농가주택 개량을 위한 감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가
주택 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가주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
상 축산에 종사한자가 취득하는 목
장 용지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50%감면한다.**

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를 면제한다.

○농촌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촌
지역 제외)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
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
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장 양축농민의 축산소득에 대한 세금

1. 축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가. 개요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축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 제19조의 농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
다. 농업소득중 작물생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축산소득에 대하여도 농가부
업규모의 축산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종합소득	이자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

나. 소득의 구분

다. 종합소득의 내용

종합소득이란 소득세 납세의무자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소득을 뜻 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된다.

라.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

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전년도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한다.

〈산식〉

$$\text{사업소득금액} =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text{이월결손금}$$

종합소득과세표준	\times	기본세율 (소득세법55조1항)	=	종합소득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times		=	퇴직소득산출세액
산림소득과세표준	\times		=	산림소득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times		=	양도소득산출세액

마. 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 한다.

바. 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사. 농가부업 축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12)

(1)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2〉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8천만원 초과	1천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표3〉 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단위 : 두수)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30	30	200	300	300	5,000	10,000	10,000

○부업규모축산의 범위

-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단,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봄)
-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적용

예) 젖소 10마리, 소 35마리 사육 시 부업규모가 아님

(2) 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

-부업규모 초과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아.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세감면규제법 96조)

(1)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간 과세연도까지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2)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다.

제2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요령

1. 개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얻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득세의 확정신고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고는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소득만이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①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 ②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이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③ 양도소득만이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 ④ 비과세되는 소득만이 있거나, 분리과세소득만이 있는 경우
- ⑤ 연 3백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받은 경우
- ⑥ 일용근로소득만이 있거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2. 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소득세확정신고시에는 소득을 종합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①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부(양식은 세무서에서 무료로 교부)
- ② 과세표준확정신고소득금액계산명세서 2부
- ③ 소득공제사항명세서 1부
- ④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2부 : 소득공제 사항이 전년도 신고내용과 변동이 있는 경우에 2부를 제출하며,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거나, 거주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호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불이행시에 받는 불이익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 ① 소득공제 및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 ②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③ 사업의 규모로 보아 마땅히 기장을 하여야 할 사람 또는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충분히 기장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높은 율의 차등과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의 엄정한 조사도 받게 된다.

4.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자산소득 합산신고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가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농지소득에 대한 농지세

1. 개요

농지세란 전, 답 등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농지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농지로부터 생긴 농민의 소득이라는 데 대한 정책적인 배려로 다른 소득과 같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세율을 낮게 책정한 농

지세를 과세하고 있다. 농지세는 보통세인 시, 군 세이며 농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2. 과세 표준의 계산

$$\text{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text{소득금액}$$

$$\text{소득금액} - \text{비과세소득} - \text{감면소득} - \text{기초공제액} = \text{과세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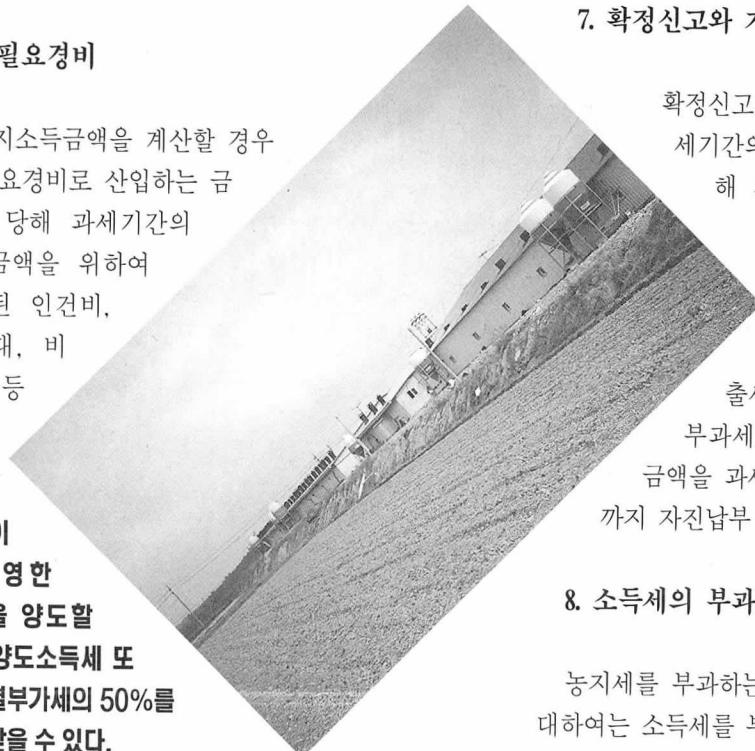
3. 수입금액

농지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수입금액은 수확한 농작물의 실제 판매수익금으로 하되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농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4. 필요경비

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위하여 투하된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등

10년이
상 경영한
목장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또
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5. 기초공제

농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농지 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공제한다.

6. 세율

〈표4〉 농지소득에 대한 과세율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6
1,000만원 초과 2,500만 원 이하	108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7
2,500만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513만원+2,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8
5,000만원 초과	1,463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7.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확정신고 :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지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진납부 :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세의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

8. 소득세의 부과금지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養豚**

〈다음호 계속〉